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해빙기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5. 4.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3건	3	0	0	0	0	0	0	0
1	※※※※※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1							
2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3	◇◇◇◇◇ ◇ ◇	☆☆군 ◆◆◆◆전용구장 건립 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
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5
3.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0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상수도 시설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중에 있다.

[표] 사업 개요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계약자
			계	도금액	관금액		
△△면 ▲▲2리(▽▽)급수구역 확장공사	△△면 ▲▲리	상수관로 L=5.1km	922	501	421	2024. 4. 8. ~ 2025. 4. 2.	₩ ¥ 종합건설(주) 000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면 Å Å 리	상수관로 L=20.6km	5,629	2,844	2,785	2023. 8. 24. ~ 2025. 4. 12.	(주)\$\$건설 000

1.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¹⁾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1) 점용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도로의 복구방법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²⁾를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의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에 수도관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대상 시설이 있는 읍면장에게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에서는 “△△면 ▲▲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의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농도 302호선) 상에 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³⁾하면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②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④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⑤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⑥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3) 농어촌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2024. 4. 11. △△면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감사일(2025. 3. 11. ~ 3. 17.) 현재 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어촌도로에 수도관 약 L=1.07km를 매설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에서는 “△△면 ▲▲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및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

3.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에서는 “○○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수지의 비탈면보호공에 과다하게 평떼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후 공사추진하시기 바라며, 품질관련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 ♪ ♪에게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군 ♣♣읍 ♣♣리~♣♣면 ♠♠리 일원에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 사 금 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군 ♣♣읍 ♣♣리~ ♣♣면 ♠♠리	하천정비 6.18km 교량 11개소	20,153	15,055	5,098	2021.03.12. ~ 2025.12.31.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Å Å)	51%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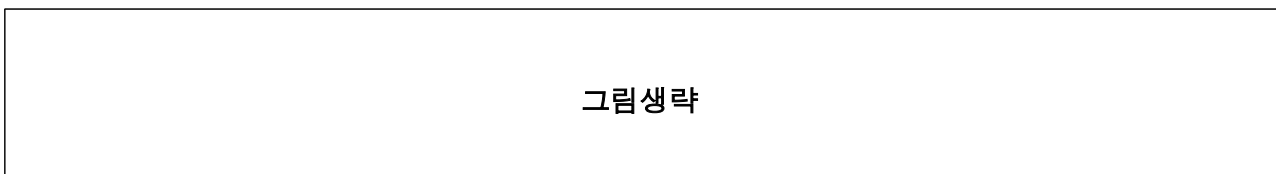
따라서 ☆☆군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 미이행 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2] 및 [사진]과 같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여부 지적사항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일자	협의내용	지적사항	비고
2019.12.23	◦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은 하천변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하천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관리	

[사진] 공사현장 사진



2. 축중기 설치 의무 위반

「도로법」 제7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⁴⁾」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⁵⁾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

4)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 2018.8.1.시행

5)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m³ 이상인 경우)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⁶⁾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발주되어 운영 중인 현장은 설계변경 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이 추진하는 공사현장의 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경우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되어 있을 시 설계 변경하여 반영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본 공사현장 내 순성토 및 사토 운반 계획량이 43,653m³으로 축중기 설치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설계내역에 축중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지침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설치된 채 향후 잔여 공사추진 시 지속적인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로 안전사고 발생 및 도로 훼손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발생이 우려된다.

3.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6)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발주청인 ☆☆군 ○○○○○에서는 본 공사 구간 중 “칠곡”구간 사토운반(전체 29,930m³, 운반거리 L=5km) 및 “은행정”구간 순성토량(전체 13,723m³, 운반거리 L=5km)에 대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에 입력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2022.11.~12. 1개월간 “은행정”구간에 성토물량(2,493m³)을 외부 사업장으로부터 별도 비용 없이 반입되었음에도 실정보고 및 총괄 변경 없이 00,000천 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축중기 미설치·설계내역 미반영, 토석 정보공유시스템 미관리 및 순성토 미정산 등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아래 관련자 중 ◇◇◇는 주의처분 하시고, △△△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읍 ♯♯로 0000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담당하면서 2023. 1월부터 2025.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 처리하였고 건설사업관리계획, 공사장 안전관리, 품질관리계획 승인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약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군 ◆◆◆◆ 전용구장 건립공사	운동시설(체육관 998.30㎡)	◇◇◇◇◇◇◇ (23.1~25.8)	24.8.13	24.10.14 (미신고)	119	3,613	〇〇건설(주) (건축사사무소 〇〇)	착공신고 수리전사행

1. 건축기획 및 착공신고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2]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⁷⁾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및 공사수행방식 등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기획 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 후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시행 전에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의뢰하고, 착공신고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기획 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 후 착공 전에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나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기획 업무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또한 설계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를 하여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2024. 10. 14. 공사를 선 착공 후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7) 건축사,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할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그 결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건축기획 업무 미이행 및 착공신고 수리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사업비 및 안전관련 설계도면 검토 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공공건축건립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 원 이하	필수	x	선택	선택
5천만 원~1억 원 미만	필수	x	필수	선택
1억 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우선적용)

2.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식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⁸⁾, 수직보호망⁹⁾ 또는 방호선반¹⁰⁾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썰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

8)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9)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0)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대 설치, 이동통로 확보, 주변정리 및 출입통제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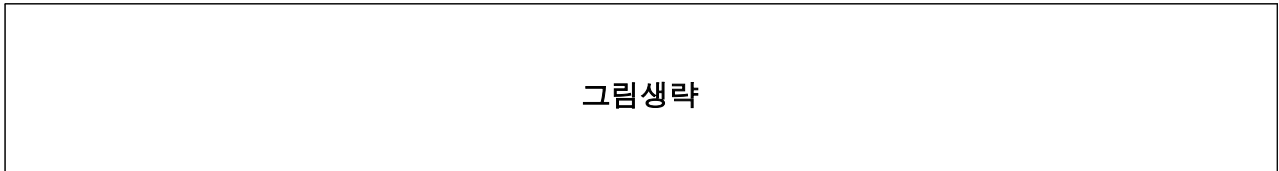
그런데도 ☆☆군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천장 및 마감공사를 위해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바닥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비계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비계바퀴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도 최상부 안전 난간대 및 아웃트리거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아래 [그림 2]와 같이 안전 난간대 일부 미설치, 공사용 자재 방치, 이동통로 미확보 및 출입통제 부적정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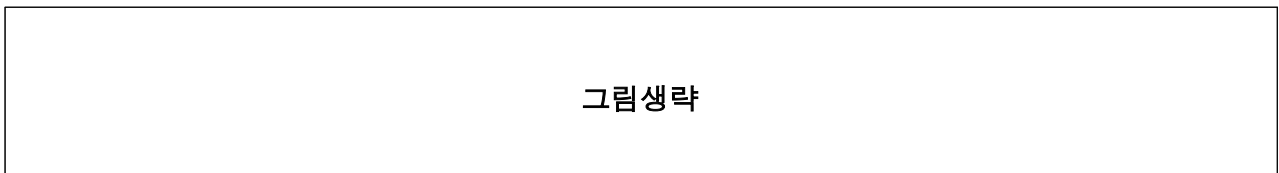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이동 중 안전사고, 철근 낙 발생 및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1] 이동식 비계 설치 부적정 현황



[그림 2]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3.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 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 ◇◇◇◇◇◇◇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읍 ♣♣로 0000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 태가가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025. 3. 17.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품을 승인(기준 446일, 실제 300일) 하였고, 공사 입찰 시에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요인 및 주 5일 근무제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향상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기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¹¹⁾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군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 한 사실이 있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과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행

정의 신뢰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공사감독 소홀(품질시험계획서 미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하이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품질검사 대장 작성·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나 아무런 검토·확인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등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상기와 같이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에게는 훈계 처분, ◇◇◇과 ♣♣♣에게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